

서울연구원 · 한국산업노동학회 학·연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

서울연구원과 한국산업노동학회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.)는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, 궁극적으로 서울의 노동문제 연구 및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(이하 '이 협약' 이라 한다.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의 관심분야인 서울의 노동문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주요 이슈 발굴, 공동연구, 학술행사를 추진하고, 연구정보와 자료를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범위) 양 기관은 아래 각 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서울의 노동문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주요 이슈 발굴 및 공동연구, 전문 인력 상호 교류 실시
2. 정책 개발 및 의제 확산을 위한 공개 학술행사(세미나, 워크숍, 토론회 등) 개최
3.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문제 발전 방안 협력
4.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
5.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협력

제3조(협약 준수) 양 기관은 이 협약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.

1.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양 기관은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경비 부담)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5조(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)

1.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2.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.

제6조(비밀 유지)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,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제7조(협약서 교환)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양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.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이 협약서에 날인하였다.

2017년 3월 22일



서 울 연 구 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

원 장



한 국 산 업 노 동 학 회

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50길 24-7

회 장

한국산업노동학회 · 서울연구원 학·연 상호 협력 업무협약서

한국산업노동학회와 서울연구원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.)은 상호 긴밀한 교류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, 궁극적으로 서울의 노동문제 연구 및 정책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(이하 '이 협약' 이라 한다.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양 기관의 관심분야인 서울의 노동문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주요 이슈 발굴, 공동연구, 학술행사를 추진하고, 연구정보와 자료를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력 범위) 양 기관은 아래 각 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.

1. 서울의 노동문제 연구와 정책 개발을 위한 주요 이슈 발굴 및 공동연구, 전문 인력 상호 교류 실시
2. 정책 개발 및 의제 확산을 위한 공개 학술행사(세미나, 워크숍, 토론회 등) 개최
3.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문제 발전 방안 협력
4. 학술자료,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
5.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분야 협력

제3조(협약 준수) 양 기관은 이 협약 사항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의한다.

1.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양 기관은 상호간에 이견이 존재할 경우에도 양 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경비 부담)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5조(효력 발생 및 협약 기간)

1. 이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3년으로 한다.
2. 양 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하거나,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을 갖는다.

제6조(비밀 유지) 양 기관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서비스 제공, 연구 활동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제7조(협약서 교환)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상호 합의하고, 양 기관의 직인을 날인한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.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기관은 이 협약서에 날인하였다.

2017년 3월 22일



한국산업노동학회

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50길 24-7

회 장



서울연구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0길 57

원 장